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 220 호            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23년 3월 일<br>(제 회) |

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발 의 자 | 박지현 의원 등 7인 |
| 발의연월일 | 2023년 3월 3일 |

#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

(박지현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220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23년 3월 \ 3일  
발 의 자 : 박지현, 이동우, 김종필,  
김호경, 박진희, 변종오,  
유재목

## 1. 제안이유

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에 특히 취약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, 지원함으로써 충청북도 도민의 건강 안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마. 폭염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- 바. 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다. 협의 :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
- 라. 조례안 예고 : 예고대상(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##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폭염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건강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폭염”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.
2. “무더위쉼터”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·군수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.
3. “폭염취약계층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-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1항의 장애인
  - 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의 수급자
  - 다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소년·소녀가장 세대 및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
  - 라. 13세 미만의 어린이
  - 마. 65세 이상의 노인

4. “폭염저감시설”은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폭염으로부터 충청북도민(이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폭염으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 라 한다) 내 시·군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4조(도민의 책무) 도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도와 시·군 등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고,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조(종합대책 수립 등) ① 도지사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조에 따른 폭염대책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폭염대응 종합대책(이하 “종합대책” 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고, 폭염대책기간에 이르기 전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폭염 현황 및 전망
2.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
3.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
4. 무더위쉼터의 운영 및 관리 계획
5.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
6.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
7.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
8.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) 도지사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·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.

1. 재난 예보·경보 시설,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
2. 제8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
3.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
4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재난도우미 운영) ① 도지사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이장·통장
2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
3.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
4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
5. 재난·복지·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
6. 재난,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,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9조(폭염취약계층 지원) 도지사는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선풍기, 에어컨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
2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무더위쉼터 지원)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시설의 냉방기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) ① 도지사는 폭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도내 시·군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
2. 폭염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
3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폭염저감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에 따른다.

제12조(폭염 안전교육 실시)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3조(협력체제 구축) 도지사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·군,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## 폭염저감시설의 종류 (제2조제4호 관련)

| 폭염저감시설                | 정 의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지붕차열도장<br>(쿨루프)       | 지붕 또는 옥상에 태양광선을 반사하여 건물에 흡수되는 태양열을 저감시킬 수 있는 도료를 시공하여 건물의 실내온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. |
| 물안개<br>분사장치<br>(쿨링포그) | 물 분자를 분사하여 주위의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미세 물 분자의 기화를 이용하는 냉방장치를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 |
| 도로차열포장                | 배수성 아스콘 및 차열성 포장을 통하여 노면 온도를 저감시키는 도로포장 방법을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그늘막 및<br>그늘목          | 도로변과 공공시설 등에 파라솔 등의 설치 및 나무식재를 통해 무더운 여름철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.         |
| 보도나무그늘<br>만들기         | 여름철 도심 내 보행자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등나무터널 등과 같이 나무를 이용한 자연그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.          |
| 수경시설                  | 분수나 호수·인공폭포, 벽천·생태연못 등 물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시설                  | 상기의 시설물 외에 여름철 도시의 온도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관계법령

### □ 자연재해대책법

제3조(책무)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,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3. 21.>

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(이하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0. 22., 2017. 10. 24., 2020. 1. 29.>

1. ~ 5. (생략)

6. 폭염대책

가. 폭염피해 예방대책

나.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

다. 각 유관기관 지원·협조 체제 구축

라.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

7. ~ 9. (생략)

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, 점검 방법, 점검 결과의 기록·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시장[특별자치시장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(이하 “행정시장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, 주민 교육·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

여야 한다. <개정 2012. 2. 22., 2017. 3. 21.>

⑥ 국민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·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,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·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폭염피해 예방 및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

## 2. 비용발생 요인

-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무더위쉼터 지원 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

## 3. 관련조문

- 안 제9조(폭염취약계층 지원) 도지사는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1. 선풍기, 에어컨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
  2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안 제10조(무더위쉼터 지원)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시설의 냉방기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안 제11조(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) ① 도지사는 폭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1. 도내 시·군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
  2. 폭염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
  3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폭염저감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에 따른다.
- 제12조(폭염 안전교육 실시)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## 4. 비용추계 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 : 2023 ~ 2025(5년간) 추계

